

증권 대차거래 약관 (대여자용)

제정일: 2010.11.15

개정일: 2025.07.25

시행일: 2025.07.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등)

- ① 본 약관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중개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 한다)를 행함에 있어 증권의 대여를 신청한 자와 회사 사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약관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대여가능풀에 제3조에 의한 대상증권을 대여해 주는 자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 2 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차거래”라 함은 회사의 증권대차거래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대여자가 보유중인 증권을 회사에 대여하는 “대여거래”와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차입거래”를 말한다. 이 약관에서는 대여자가 회사에 대여하는 “대여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② 대차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대차 : 대여자와 회사간에 대여수수료율, 대차거래기간 등의 대여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차입거래에 의해 체결되는 대여거래로, 대여자의 대여상환청구 또는 대여매도로 인한 회사의 상환에 의해(임의상환 포함) 거래가 종료되는 일반형 대여거래를 말한다.
 2. 맞춤대차 : 대여자와 회사간에 대여거래종목, 대여거래수량, 대여수수료율, 대차거래기간 등의 대여거래조건을 사전협의 하고, 회사 증권대차거래약관 <별첨 1> 또는 <별첨 2>를 작성하는 맞춤형 대여거래를 말한다.
- ③ “대상계좌”란 대여거래가 가능한 대여자의 주식매매가능계좌를 말한다.
- ④ “대여자”란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고, “차입자”란 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 ⑤ “대차약정”이란 대여자가 회사에게 증권을 대여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⑥ “차입신청”이란 차입자가 회사에게 증권을 차입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⑦ “대여가능풀”이란 대여자가 영업점, 영업직원실명확인 또는 HTS등을 통하여 대차약정을 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한 대상증권의 총집합(Pool)을 의미한다. 이때, 위탁고객 대여 Pool에 속한 증권은 실제 회사와의 대차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그 법적 소유권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다시 회사가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차입자에게로 그 법적 소유권이 이전된다. 단, 대차증권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증권(의결권 제외)은 대여자에게 귀속된다.
- ⑧ “대차거래(계약)”란 대여자의 대차약정 후 대여가능풀로 편입된 증권에 대하여 차입자가 차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별도로 통지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⑨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대여자, 차입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본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 중 맞춤거래를 제외한 대차거래는 개방형거래이다.

⑩ “상환청구”란 증권의 대여거래를 종료하기 위한 대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⑪ “임의상환”이란 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차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⑫ “영업일”이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가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단, 외화증권의 경우 해당 해외증권시장과 국내증권시장이 모두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⑬ “대여확정”이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증권의 경우 인수도 완료 전 거래를 말한다.

제 3 조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① 대차거래 대상증권(이하 “대상증권”이라 한다.)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S(Home Trading System)에 게시된 증권을 말한다.

1. 상장주권 (외화증권 포함)
2. 상장채권
3.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주식예탁증권(DR)

② 제 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맞춤대차를 통해 대여자별, 차입자별 합의에 의해 대차거래 가능종목을 제한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평가기준일은 매일이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장주식: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평가기준일에 형성된 종가
단, 외화증권의 경우 해외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 영업일 종가(해외거래소가 미국인 경우 2영업일 전 종가)를 기준
2. 상장채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산술평균한 가격
3.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산술평균한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제 4 조 (대차거래의 정지)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본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대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본건 업무를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본건 업무를 재개한 후 이러한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차거래 대차약정 등

제 5 조 (대상계좌의 범위)

- ① 대여자가 대차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주식매매가능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통보처 미선택계좌, 제휴대출약정계좌, ELW 약정계좌, 증거금 미징수계좌, 외화계좌(외화약정계좌 아님/비거주외국인개설계좌), 통폐합계좌, 거래제한계좌, 질권, 압류계좌, Wrap 계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차약정을 할 수 없다.

제 6 조 (대차약정 등)

- ① 대여자는 회사의 영업시간동안 영업점 내점, 영업직원 실명확인 또는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 유선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차약정을 한다.
 1. 주식매매가능계좌의 개설 또는 보유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
 3. 맞춤대차거래 시에는 대여자와 회사간의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개별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② 대여자는 주식매매가능계좌의 계좌단위로 대차거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대여자의 주식매매가능계좌 내 보유증권은 대차약정의 완료와 동시에 회사의 대여가능 풀로 편입된다. 단, 고객의 의사에 따라 보유종목 중 일부를 대여신청 종목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유 및 제8조, 제9조 에 따라 대여자의 대차약정신청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차입자에게 대상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제 7 조 (대차약정의 효력)

- ① 대여자의 대차약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대차약정 대상 주식매매가능계좌의 폐쇄
 2. 대차약정의 해지
- ② 대여자가 대차약정을 완료하는 경우, 대차거래계약은 대차약정만으로 자동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차입자의 차입신청 및 회사의 통지 등 제3장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대차약정의 취소)

대여자는 언제든지 대차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대여자의 대차약정에 의해 대차거래계약이 체결된 대상증권이 존재하는 경우 고객이 직접 상환청구 후, 대상증권이 상환 완료된 이후에 대차약정의 해지가 가능하다.

제 9 조 (대차거래의 제한)

- ① 회사는 대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여자의 대차약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자의 파산 등의 사유 및 회사의 대차거래 대상 주식매매가능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질권설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여자가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참가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② 전항에 따라 대여자의 대차약정이 제한된 경우, 회사는 해당 대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대여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차거래의 체결

제 10 조 (체결수량의 결정)

- ① 대차거래 체결수량은 대여자의 대차약정 및 차입자의 차입신청 이후에 결정되며, 차입자의 차입신청수량이 대여가능 풀의 대여가능수량보다 많을 경우, 대차거래 체결수량은 대여가능 풀의 대여 가능 수량 이하로 결정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대차약정 시 대여가능 풀에서 차입자에게 대여될 수 있는 고객보유증권의 종목별 대여가능 비율 및 수량을 대여자에게 통지한다.

제 11 조 (체결 방법)

- ① 회사는 차입신청이 있는 경우 종목별 대여가능 풀의 규모, 대여가능수량 및 차입신청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차거래 체결수량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 및 기준에 따라 각 대여자에게 대여자 별 대차거래 체결수량을 배정한다.
 1. 대여가능수량이 많은 대차약정계좌가 대여가능수량이 적은 대차약정계좌에 우선한다.
 2. 대여가능수량이 같은 경우, 회사는 대차약정시점이 우선하는 대여자에게 대차거래 체결수량을 배정하며, 대차약정시점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대상계좌의 개설시점을 기준으로 그 개설시점이 앞선 대여자에게 배정한다.
- ② 맞춤대차거래는 회사와 대여자가 협의한 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의 조건에 따라 일반대차거래보다 우선 체결될 수 있다.

제 12 조 (대차거래 체결내역등의 통보)

- ① 회사는 대차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차거래체결일 당일에 해당 내역(종목, 수량, 대여수수료 등)을 대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체결내역 등을 전화,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SMS(지점 내방 시)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 13 조 (대차거래 체결수량의 인도)

- ① 회사는 대차거래가 체결된 경우 대여자의 대상계좌에서 대상증권의 대차거래 체결수량을 출고한 후 출고된 수량을 차입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단, 외화증권의 경우 대상계좌에서 "대여확정" 후 인도완료 되어야 대차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며, 대여수수료는 "대여확정" 시점부터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6조의 내용에 따라 차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차거래 대상증권을 차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대여수수료

제 14 조 (대여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지급)

- ① 회사는 대차거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여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원화로 지급한다. 위 개시일은 실제 차입자가 차입하는 날을 말하며 종료일은 제20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 ② 대여수수료는 대차거래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식: 일별 대여주식 평가금액 X 대여수수료율(연) / 365
2. 대여주식 평가 금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전 영업일 종가 X 대여 주식수
단, 외화증권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형성된 전 영업일 종가(미국 : 2영업일 전 종가)
X 대여 주식수 X 증가기준 기준환율
- ③ 대여수수료 지급일은 발생월의 다음월부터 매월 20일에 지급처리하며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④ 회사는 대여자에게 대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대여수수료율의 범위 등 대여수수료 산정 관련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banking/대출/청약 > 대여 > 주식 대여서비스 안내, HTS 등에 게시한다.

제 5 장 권리의 발생 및 보전 등

제 15 조 (대차거래 증권의 권리발생 및 귀속)

- ① 대차거래가 체결된 대상증권과 관련하여 배당, 신주인수권 행사, 무상, 유상, 감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권리는 대여자에게 있으며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과 같다.
 1.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2. 주식배당, 무상증자 : 이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이하 "배당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주식을 상장일에 일반주식으로 입고 처리한다.
 3.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권리가 소멸되며, 청약시에는 상장일에 일반주식으로 입고 처리한다. (단, 외화증권의 경우 청약불가)
 4. 감자, 분할, 합병 등: 당해 주식의 상장일자에 대상계좌의 대차수량을 정정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2영업일(T+2일)까지 고객에게 인도한다.
- ② 대여주식에 권리발생 시 단수 주 합산은 동일고객이 대여한 내역에 대해서만 종목별로 합산한다.
- ③ 대여주식에 대해서는 권리발생에 따른 기준가하락에 대해 권리평가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권리발생 시 일시적으로 계좌평가 금액이 하락할 수 있다.
- ④ 공개매수 및 매수청구는 대여주식 상태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 ⑤ 대여자가 보전 받아야 할 대여주식에 대한 권리에 의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⑥ 대여자가 대여종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대여자는 사전에 회사에게 해당 대차거래(계약) 종목에 대한 중도상환을 진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은 제7장 제19조에 따라 진행한다.
- ⑦ 권리 행사는 대여종목이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 인도가 완료된 시점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 ⑧ 외화증권의 경우 대여종인 주식의 옵션배당(대여자가 대차거래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배당을 말한다) 및 기타옵션 권리행사는 거래상대방의 의해 결정되므로 본인의 선택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 ⑨ 현지 시장의 천재지변이나 공휴일,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등으로 권리 처리 일자의 시차가 발생 될 수 있다.

제 6 장 담보관리 및 상환책임 등

제 16 조 (담보의 제공)

- ①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아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차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② 회사는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증권을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차입자로부터 받는다.

제 17 조 (상환책임 등)

- ① 차입자가 대차거래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은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여 그 처분금액으로 대상증권과 동종, 동량의 증권을 매입한 후 대차거래 기간 동안 발생한 대여수수료 및 기타 대상증권에 부수하여 발생한 권리 등과 함께 회사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고 차입자에게 대여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장 대차거래의 상환 등

제 18 조 (대차거래의 해지)

- ① 대여자는 언제든지 대상증권에 대한 신청상환(‘신청상환’이란 대여자가 대여증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매도상환(‘매도상환’이란 대여자가 대여증권에 대한 매도주문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을 함으로써 대차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대상증권의 거래가 제한되는 사유(이하 “거래제한사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는 거래제한사유가 소멸되는 시기까지 대차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② 대여자는 영업점 내점 또는 전화, 기타 방법으로 대상증권의 신청상환 또는 매도상환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일반대여에 한하여,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종목을 대여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임의상환 할 수 있다.

제 19 조 (대상증권의 상환)

- ① 회사는 대차거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거래종료일에 대상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 대여자가 대상증권의 대여기간 중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완료일 포함 5영업일까지 당해 대여증권을 대여가능 풀에서 제외한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의 요청 없이도 대여자에게 체결종목을 중도 상환할 수 있다.
 1. 대여자가 제 9 조에 해당되어 대차중개가 불가능한 경우
 2. 차입자가 체결종목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단, 외화증권의 경우 대여확정 후 대여실행 완료 전까지 상환신청 불가)

제 20 조 (대차거래의 종료)

대차거래의 거래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상황에 의한 종료의 경우: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 상환
(외화증권의 경우 신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상환가능하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매도상황에 의한 종료의 경우: 매도결제일

제 8 장 기 타

제 21 조 (상속발생시 처리)

대여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대상증권에 대한 상속이 진행될 경우, 회사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요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22 조 (비밀 준수 의무)

회사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약관 등의 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대차거래를 위한 시스템 등의 중요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또는 넥스트레이드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의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대여자에게 불리한 것일 경우, 이를 서면 등 대여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여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대여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변경 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여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변경 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본 약관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야 하며 대차거래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S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대여자가 본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 (기타)

- ① 회사는 대차거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차거래 종료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정산을 처리한다.
 1. 미 확정 또는 미 인지된 제 세금, 수수료, 배당,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 변동
 2. 계산상의 오류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률 및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③ 본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제 26 조 (대여자의 변경사항 신고)

대여자는 연락처 등 주요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대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27 조 (분쟁조정)

회사와 대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여자는 회사의 민원처리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 조 (관할법원)

본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 이 약관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1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1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6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0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0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2023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5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